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1조 개정(공포 ‘20.1.29.)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하고, 지방채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 폐지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안 제10조제2항·제3항)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나.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 부여(안 제10조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따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
(안 제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자치단체의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승인 요건 유지(안 제3항, 제5항)

마.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 및 한도액 통보 등의 주체 및 일정 변경(안 제11조제1항)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통보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및 관련 일정 변경

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 폐지(안 제37조의7 제2항)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지급, 신고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포상금의 20%이상~30%미만 내에서 감액 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 지급 기준 신설

사.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및 예산 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54조의2 제7항, 제54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13. ~ 4.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기준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채 한도액 산정에 관한 자료의”로 하고,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를 “사실과 다르게 한도액을 산정하였거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지”로 하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를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월 15일”을 “7월 1일”로 하고,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도액 산정 기준을 포함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산정 후 매년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을 얻어”를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쳐”로 하고, 기존의 제3항을 제4항으로, 기존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기존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포함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재원조달 방법
2. 채무상환 계획
3. 그 밖에 사업내용, 재정여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7조의7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전단”으로 하고, 후단의 “하되, 2억원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기준을 신설한다.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54조의2제7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신설하고,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내용으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7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37조의7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생 략)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u>금액으로 한다.</u>	② ----- ----- ----- ----- ----- ----- <u>기준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u>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정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u>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 ----- ----- ----- ----- ----- ----- ----- ----- <u>제2항에</u>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지방채발행 한도</u>	④ ----- ----- <u>제2항 및 제3항</u>

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

에 따른 지방채 한도액 산정에 관한 자료의 -----
사실과 다르게 한도액을 산정하였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지 -----
-----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 7월 15일까지-----
----- 한도액 산정 기준을 포함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산정 후 매년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쳐 -----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포함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

② ----- 제1항 전단

----- 한다. 다만,

원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 ⑥ (생략)

<신설>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예

<신 설>

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내용으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16